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0년 2월
석사학위논문

기업특성에 따른 법인세 부담에 관한 연구

-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신 재 영

기업특성에 따른 법인세 부담에 관한 연구

-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rporation TAX Burden by Firm
Characteristics

2011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신 재 영

기업특성에 따른 법인세 부담에 관한 연구

- 제조업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기 평

이 논문을 경영학 석사 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신 재 영

신재영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조 승 제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승 용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기 평 인

2010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 | |
|-------------------------------|----|
| <abstract>..... | iv |
| 제1장 서 론..... | 1 |
| 제1절 연구목적..... | 1 |
|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 2 |
| 제2장 이론적 배경..... | 4 |
| 제1절 조세지원제도..... | 4 |
| 제2절 유효법인세율에 관한 선행연구..... | 11 |
| 제3절 법인세부담과 기업규모에 관한 선행연구..... | 19 |
| 제4절 법인세부담과 기업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 22 |
| 제3장 연구설계..... | 24 |
| 제1절 연구가설..... | 24 |
| 제2절 연구의 모형..... | 28 |
| 제3절 변수의 정의..... | 29 |
| 1. 법인세부담율..... | 29 |
| 2. 설명변수의 측정..... | 31 |
| 제4절 표본기업의 선정..... | 35 |

| | |
|-------------------------|----|
| 제4장 실증분석 결과..... | 39 |
| 제1절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 39 |
| 제2절 회귀분석결과..... | 42 |
| 제5장 결론..... | 44 |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 44 |
|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과제..... | 45 |
| <참고문헌> | 64 |

<표 목차>

| | |
|-------------------------------------|-----|
| <표 2 - 1> 세액공제 | 5 |
| <표 2 - 2> ETR의 세 부담능력 대응치의 의미 | 8 1 |
| <표 3 - 1> 변수 요약 | 4 3 |
| <표 3 - 2> 표본기업의 선정과정 | 6 3 |
| <표 3 - 3> 표본의 연도별-산업별 분포 | 7 3 |
| <표 4- 1> ETR 기술통계량 | 9 3 |
| <표 4- 2> ETR1 상관분석 | 1 4 |
| <표 4- 3> ETR2 상관분석 | 1 4 |
| <표 4- 4> 다중회귀분석 | 3 4 |

Abstract

A study on The Corporation TAX Burden by Firm Characteristics.

by Shin Jae-young

Advisor : Prof. Kim Ki-Pyung, Ph.D.

Department of Accounting,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All of the firms calculates the corporate tax by the application of a tax law. But, there are differences in substantial corporate tax burden for each company because of the corporate tax law, various tax support system and the differences in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and tax law.

Therefore, in this study, I examined whether differences of substantial corporate tax burdens measured in effective corporate tax rate(ETR) are systematically related to the firm characteristics such as business scale, capital intensity, research and development intensity, liability ratio, and return on assets.

I used the effective corporate tax rates as a dependent variable. Net income and income and loss before incomes tax are used as a denominator of proxy for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and income tax expense on the income statement is used as a numerator.

And I used the business scale, capital intensity, research and development

intensity, liability ratio, and return on assets as independent variable for the study. The financial statement data provided by the Korea Investors Service, Inc. (KIS-FAS) was used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effective tax rate and firm characteristics using SPSS.

As a result, three regression coefficients indica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meaning, and the other regression coefficients are not proper as criteria of effective corporate tax. In ETR1 and ETR2, capital intensity, liability ratio and return on assets have been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in significance level of 1%.

It may be considered that tax support has been selectively provided for the purpose of activating special economic activities, and this has made difference of effective corporate tax ratio. This systematic difference is related to the firm characteristics.

Accurate measurement of corporate tax burden or tax benefit may allow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previously existing tax policy. An accurate measurement of the corporate tax burdens will lead to the new direction of tax policy.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재정수입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국가운용에 필요한 재정수입은 대부분 조세에 의존하고 있다. 조세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 될 수 있지만 조세란 “공공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또는 경제정책·사회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단체가 다른 경제주체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그리고 특별한 개별적 보상 없이 부과하는 급부(給付)를 말한다.”¹⁾라고 정의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과권 또는 징수권이라고 하며 나라마다 이를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조세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국가의 조세체계는 단순한 재정수입의 확보뿐만 아니라, 모든 가용자원의 배분하고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하며, 고용·생산·물가 등 경제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세제도는 국가의 재정수입의 주요 원천임과 동시에 자원배분의 기능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내경제가 침체되어 있으면 법인세율인하나 소득세율을 인하와 같이 세율을 낮추거나 감면을 통해 기업의 투자재원을 확보할 기회를 주고 개인의 소비활동을 가능하게 해준다. 반대로 경제가 일정수준을 넘어 호황이면 조세제도를 통하여 경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조세제도가 경제의 수요관리의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법인세에 대한 여러 연구방법과 사례를 들어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던 방법 중에서 측정방법으로 유효법인세율(ETR)측정과 유효법인세율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변수들을 찾아 기업이 속해 있는 환경의 특성에서 법인세 부담정도가 영향을 보인 결과를 측정하여 조세의 공평성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1) 김기평·이영태·최화섭, 세무회계, 청목출판사, 2006.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본 논문에서는 조세의 특성상 법인세는 기업의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부과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연구배경이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기업들의 실질적인 조세부담 정도가 기업특성에 영향을 받는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유효법인세율과 기업특성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 우리나라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선행연구들이 시행했던 유효법인세율 측정을 활용하고, 우리나라의 기업이 속해있는 환경의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여 유효법인세율 측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유효법인세율로 측정되는 기업의 실질적인 조세부담 차이가 기업규모, 자본집약도, 부채비율, 연구개발집약도, 자산수익률과 관계가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들의 실질적인 조세부담 정도가 기업특성변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첫째, 선행 연구에서는 조세정책상 목적에 의해 법인세제상 특정유형의 법인에게 조세부담이나 혜택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Zimmerman(1983)의 유효법인세율을 이용해오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도 이를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둘째, 가설을 검증하고자 법인세부담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특성 변수로 ① 총자산기준의 기업규모(SIZE) ②자본집약도(CAPINT) ③연구개발집약도(RNDINT) ④ 부채비율(DEBT) ⑤자산수익률(ROA) ⑥유형자산투자비율(INVTPM)을 선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변수들이 법인세부담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무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신용평가(주)의 데이터베이스인 KIS-VALUE에 수록되어 있는 각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자료를 추출하였다. 연구대상기간은 2003년에서 2009년 7년으로 한정하여 통계프로그램인 SPSS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및 범위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기업규모 및 기업특성에 따른 유효법인세율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고 제3장 연구설계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기존 문헌을 토대

로 하여 가설설정과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변수를 정의한 후 표본을 산정하였다. 제 4장에서는 실증분석의 결과와 해석을 위해 기술통계량을 제시하고 기업특성요인이 조세부담측정치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점 등을 제시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조세지원제도

조세지원제도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는 면이 있고 다른 한 면으로는 조세의 공평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 조세지원제도의 유형을 보면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지원제도는 법인세액이나 과세소득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조세지원제도로 세액공제, 소득공제, 세액감면, 면제세액 등 직접지원제도가 있으며 법인세납부시기를 일정기간 동안 연기함으로써 법인의 절감 조세액만큼 이자의 자금용자를 해주는 효과를 갖는 조세이연제도로 준비금의 손금산입과 압축기장충당금(또는 일시상각충당금)등 간접지원제도 등이 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원제도 등을 두고 있다. 이들 조세지원제도는 각 기업의 조세부담 측정치에 영향을 미치며, 선행연구에서 조세부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기업특성 요인으로 이용되었다. 조세의 직접지원제도와 간접지원제도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직접지원제도

직접지원제도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서 세법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직접감면해주는 방법이다. 직접지원제도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면제세액 등이 있다.

가.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액에서 법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계산상 과세소득의 일부를 공제해 줌으로써 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이며,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특정 소득의 일부를 사업연도소득에서 제외시켜 과세되지 않도록 하는 조세특례제도로서 비과세소득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즉, 특정산업의 육성과 재무구조개선 등과 같은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특정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일정한 소득금액을 공제해줌으로써 법인세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이다. 그리고 소득공제로 인한 감세효과는 직접적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한계세율에 따라 결정된다.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시 차감하는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자소득공제,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의 초과배당금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54조), 증권투자회사의 초과배당금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53조), 축산업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101조)등이 있다.

나.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과세소득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목적에 의해 세법에서 규정한 액만큼 공제하는 것으로 산출세액에서 직접 일정한 세액을 공제하여 직접적인 조세지원방법으로 세금혜택이 납세자가 부담할 세액에 완전히 반영되는 특성이 있다. 세액공제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는 항목 중의 하나로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되는 소득공제와 구별된다.

<표 2 - 1> 세액공제

| 세액공제구분 | | 취지 | 이월공제 |
|-------------------|----------|-------------------|-------------|
|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다국적 이중과세의 조정 | 5년 |
| | 재해손실세액공제 | 재해법인의 조세경감 | X |
| | 농업소득세공제 | 농업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 | X |
| 조세특례제한 법상 세액공제 | 투자세액공제 | 투자촉진 | 4년 또는 7년 |

다. 세액감면

법인세법에서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과세상의 이유로 일정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외자도입법상 감면대상 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나 조세특례제한법상 특정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 주거나(세액면제) 일정비율 만큼 경감(세액경감)해 주는 조세지원제도이다. 세법상 법인의 세액감면은 면제세액과 엄격히 구분되고 있지 않다. 다만, 면제세액이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 전액을 감소시키는 반면, 세액감면은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일부분만을 감소시킨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라. 면제세액

세법의 규정에 의해 면제되는 세액으로 일반적으로 비과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면세는 국가 등이 과세권을 유보하는 것이라 한다. 세법에서 규정한 특정소득에 대하여 법인이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면제소득이라 하고 면제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세액이라 한다.

2. 간접지원제도

간접지원제도는 직접지원제도와 달리 세금을 영구히 감액내지는 비과세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납세연기효과를 주어 기업으로 하여금 화폐의 시간가치를 창출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일정기간 동안 조세징수를 연기함으로써 기업이 그 절감되는 세액만큼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즉, 간접지원제도는 법인세의 납부시기를 연기시켜주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종류로는 준비금의 손금산입과 압축기장충당금(또는 일시상각충당금)등이 있다. 특별감가상각은 94년 폐지되어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변경되었다.

가. 압축기장충당금

세법이 정하는 특정의금항목에 대해서는 일시상각충당금(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계상함으로써 당해 자산을 감가상각 하거나 처분하는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할 수 있는 일종의 과세이연제도이다.²⁾

나. 준비금

준비금이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미래 일정시점에 사용하기위하여 일정금액을 미리 적립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인세법에서 준비금을 일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해 준다. 준비금의 손금방식은 미래에 있을 비용 지출이나 자산 취득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미리 손금으로 산입하여 조세의 납부시기를 지연시켜주는 조세지원제도로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제시되어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원제도

조세지원제도란 국가가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경제활동이나 특정기업에 대하여 세금을 경감해주는 제도이다.³⁾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세지원제도에는 직접지원제도와 간접지원제도가 있으며, 이외에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외자도입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조세지원제도로는 특정수익의 익금불산입, 비과세소득 등을 들 수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중소기업육성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2) 이만우·노준화·정재연, 세법총론, 세학사, 2010

3) 윤건영·임주영, “조세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3.

중소기업(small and medium industry)이란 대기업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상시종업원 수, 자산총액 또는 소유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등이 중소기업법이 정하는 기준이내 또는 요건에 적합한 기업을 말한다.⁴⁾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력과 정보, 자본과 자원 또는 생산능력, 기술개발능력, 재무구조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러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므로 세제상, 금융, 조직 활동 등 경영전반에 대해 지원제도가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육성시키고자 하는 목적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육성, 기술개발촉진, 경기대응능력과 산업의 관련성제고 등 수입에 의지하는 생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중소기업의 특례로는 준비금 증액 설정, 특별상각을 일반 법인에 비하여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특별히 중소기업에 한해서 세액감면 등을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 ②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 ③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2)
- ④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⑥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 ⑦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3)
- ⑧ 주권상장중소기업 및 협회등록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

4) 박상범, 중소기업론, 탐복스, 2010.

나.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지원

우리나라는 국내시장이 협소하며 자원이 부족하므로 무한시장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개발을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세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 및 인력개발이 필요하므로 기술개발을 적극추진하며,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조세지원 내용 중 기술개발 준비금제도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준비금의 손금산입,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서 제19조까지 규정하고 있다.

- ① 연구 및 연구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 ②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③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 ④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 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 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 ⑦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⑧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 ⑨ 투자손실준비금과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7조)
- ⑩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 ⑪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다.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투자는 고용창출·자본재수요창출과 경제성장의 효과가 있으므로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 또한 기업이 무한경쟁시대에 살

아남기 위해서 정부의 조세지원정책도 필요하지만, 기업의 꾸준한 투자도 필수적이다. 세법상 투자유인제도는 투자액의 신속한 회수와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이용 가능한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재투자를 촉진시킨다. 투자촉진을 위한 유인세제에는 생산성향상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있다.⁵⁾

- ①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②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 ③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
- ④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⑤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의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지원제도로 제조업 또는 광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일정기간 감면해 주는 조세지원제도이다.⁶⁾

- ①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등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 ②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③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5) 조유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3.

6) 김학동,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마. 외화획득사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천연자원이 빈약하고 국내시장이 협소한 조건에서 경제개발을 추진해야 하였던 우리나라에서는 수출확대를 위한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했다. 조세정책도 이를 지원하는 방향에서 이루어 졌다. 또한 수출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1970년대까지 크게 확대되었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는 감면범위가 많이 축소·조정되었고 1998년 WTO의 보조금에 대한 폐지요구로 삭제되었다.

제2절 유효법인세율에 관한 선행연구

1. 유효법인세율에 관한 연구

가. 유효법인세율

회계학, 경제학 등의 분야에서 조세부담의 공평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유효법인세율을 이용하여 법인세부담을 측정한다. 유효법인세율(ETR : Effective Corporate Tax Rates)은 기업이 납부하는 조세부담능력 중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것으로 기업의 조세부담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유효법인세율은 조세정책 수립과 세법제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Omer, Molly, and Ziebart, 1999) 기업 활동에 미치는 조세의 영향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조세부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Porcano, 1986). 기업의 조세부담에 관한 연구와 조세와 기업규모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등에서 유효법인세율은 적절한 측정치가 될 수 있다. (Omer, Molly, and Ziebart, 1999)

법인세율은 법정법인세율⁷⁾과 한계법인세율⁸⁾, 유효법인세율, 평균법인세율 등으로

7) 법정법인세율(Statutory Corporate Tax Rate) : 법인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세율로서 모든 영리법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부터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유효법인세율은 세법이 정하는 법정세율과는 다른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법인세차감전이익에 대한 실제납세액을 소득액 또는 이익으로 나눔으로써 도출된다. 그러나 법인세부담의 분포와 기존투자의 현금흐름을 측정하는데 적절하다.⁹⁾

유효법인세율을 구하는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유효법인세율} &= \text{법인세} / \text{기업의 조세부담능력} \\ &= \text{법인세} / \text{이익} \end{aligned}$$

위 식에서 분자의 법인세는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를 말하는데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등이 될 수 있고, 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한 실제로 세무서에 납부하는 법인세액이 될 수도 있다. 유효법인세율의 계산시 법인세만 분자로 이용하는 경우 유효법인세율이라하며, 법인세와 재산세 및 배당,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분자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총세율(Effective Total Tax Rates)이라고 한다.¹⁰⁾ 분모로 사용되는 조세부담능력의 대응치로써 매출총이익, 경상이익,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등 많은 이익변수들과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변수들이 이용되고 있다.

Calian(1994)은 연구에서 유효법인세율을 평균유효법인세율(average effective tax rate)과 한계유효법인세율(marginal effective tax rate)¹¹⁾로 나누고 있다. 주로 평균유효법인세율을 흔히 유효법인세율이라고 하며 평균유효세율은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측정하는 지표이고 한계유효법인세율은 조세체계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유효세율을 분석하기로 하였다.

유효법인세율에 대하여 Wilkie¹²⁾, Wilkie & Limberg¹³⁾, Scholes & Wolfson¹⁴⁾ 등은

8) 한계법인세율(Marginal Corporate Tax Rate) : 과세소득이 1원만큼 증가할 때 부과되는 조세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9) 노현섭, 법인세제의 공평성 연구, 세학사, 2000.

10) D. Fullerton, "Which Effective Tax Rate?", Nation Tax Journal 37, March 1982.

11) 한계유효법인세율 : 과세소득이 1원만큼 증가할 때 부과되는 조세로 정의. 평균유효법인세율에서의 같이 한계유효세율(계산시 법인세만을 분자로 이용)과 한계유효총세율(계산시 법인세, 재산세 및 배당,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분자로 이용)로 구분할 수 있다.

12) Wilkie, P. J, "Corporate Average Effective Tax Rate and Inferences about Relative Tax Preferences",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988.

13) Wilkie, p. j. and S. T. Limberg, "The relationship between firm size and effective tax rate : a reconciliation of Zimmerman(1983) and Porcano(1986)",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1, 1990.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조세혜택에 의해서만 유효법인세율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익의 크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즉, 동일한 세제상의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일지라도 유효법인세율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낮은 기업일수록 유효법인세율이 낮고,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높은 기업일수록 유효법인세율이 높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효법인세율은 조세혜택뿐만 아니라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의 크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유효법인세율의 변동성은 세전 자기자본이익률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의 실증연구결과에 의하면 세전자기자본이익률이 낮은 기업들은 유효법인세율에 큰 차이가 있으며 분산이 크게 나타난다. 또한, 세전자기자본이익률이 높은 기업들은 유효법인세율에 차이가 없으며 분산이 작은 것으로 밝혀졌다. 세전자기자본이익률이 낮은 기업은 세전자기자본이익이 낮다는 이유 때문에 유효법인세율이 매우 낮거나 높은 극단치로 보고되고, 세전자기자본이익률이 높은 기업들은 법정법인세율에 근접해 가는 경향을 보인다.¹⁵⁾

셋째, 유효법인세율의 계산 시에 분모로 사용되는 이익이 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계산된 유효법인세율은 의미가 없다. 즉, 기업회계상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무회계상으로 결손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효법인세율의 경제적 해석이 곤란해진다. 따라서 실증분석을 할 경우 분석기간 중에 이익이 0이거나 음수인 기업을 표본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넷째, 기업이 실제로 운영업손실이 발생한 연도에는 세무회계상의 결손발생으로 인한 세제상혜택이 기록되지 않다가 차기이월에 실현되는 시점에서 세제상 보조금이 기록되어 유효법인세율이 낮게 기록된다. 결손이 실제로 발생한 연도에는 세제상 보조금이 낮게 기록되며 그 후에 이익이 발생한 연도에는 세제상보조금이 과대 계상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당기에 모든 조건이 동일한 기업들이라고 하더라도 전기 이전에 발생한 결손 때문에 두 기업 간의 유효법인세율이 달라져서 조세부담이 다른 것으로 기록되며, 한 기업 내에서도 연도별로 조세부담이 실제와는 다르게 기록된다.

14) Myron S. Scholes and Mark A. Wolfson, "Taxes and Business Strategy", Prentice Hall, 1992.

15) Wilkie, p. j. and S. T. Limberg, "The relationship between firm size and effective tax rate : a reconciliation of Zimmerman(1983) and Porcano(1986)",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1, 1990.

다섯째, 유효법인세율은 명시적 조세만을 고려하고 묵시적 조세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기업의 조세부담을 왜곡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묵시적 조세가 존재하면 기업의 실제 총 조세부담은 유효법인세율보다 높다. 즉, 유효법인세율에는 묵시적 조세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업들이 조세혜택을 받는 투자를 하게 되면 암묵적으로 묵시적 조세를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 적은 조세를 내게 되어 유효법인세율이 적게 계산된다. 그러므로 다른 기업 또는 다른 산업에 비하여 적은 조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기업일지라도 묵시적 조세를 고려한다면 조세를 적게 납부한다고 볼 수 없다.

여섯째, 기업의 조세부담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평균유효세율이 더 좋은 측정치가 되지만, 조세정책목적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며, 투자나 재무의사결정을 위해서는 한계법인세율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¹⁶⁾

일곱째, 유효법인세율은 기업의 이익에 부과되는 조세부담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출한다.¹⁷⁾ 그러나 기업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미리 완충지대를 설정한다는 것이다. 즉, 기업은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실제로 예상하는 법인세부담액보다 세금을 과대 계상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유효법인세율은 실제 법인세부담을 과대표시하는 문제점이 있다.¹⁸⁾

나. 유효법인세율의 선행연구

유효세율에 관한 연구는 유효세율의 정의와 측정에 관한 연구, 유효세율과 기업특성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익·조세혜택과 유효세율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

Fullerton(1984)¹⁹⁾은 유효세율을 유효세율(유효법인세율, 유효총세율)과 한계세율(한

16) Scholes와 Wolfson(1992)은 유효법인세율이 미래에 지급되는 이연법인세의 미래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유효법인세율을 계산할 때는 면세혜택을 받는 공채의 이자수익을 무시하고 차입금의 이자공제는 반영하므로 유효법인세율이 나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17) G. M. Spooner, "Effective Tax Rates From Financial Statements", National Tax Journal, 1986.

18) 전규안, "법인세부담의 공평성과 기업특성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19) D. Fullerton, "Which Effective Tax Rate?", National Tax Journal, Vol 37, March 1984.

계법인세율, 한계총세율)로 분류하고 각 세율의 적절한 측정과 이용에 대한 논의하였다. Fullerton은 유효세율이 이익흐름을 측정하는데 적절한 측정치이며, 한계세율은 투자유인을 측정하는데 적절한 측정치라고 주장하였다.

Spooner(1986)²⁰⁾는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여 유효세율을 측정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유효세율의 측정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Spooner는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여 유효세율을 계산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점을 표본선정의 문제, 산업분류의 문제, 근로소득세 및 소비세와 같은 다른 조세의 포함에 따른 문제, 조세와 이익간의 관계에 따른 문제, 외국납부세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간의 차이에 따른 문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 등으로 제시하였다.

김용훈(1996)²¹⁾은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유효법인세율이 산업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1980년부터 1993년까지의 기간 동안 10개 산업에 속하는 139개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분산 분석한 결과 산업별로 유효법인세율이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

고종권(1997)²²⁾은 유효세율의 기능적 이상현상을 파악하고 조세부담 측정치로서의 한계를 이용가능성과 신뢰성의 측면에서 제시하며, 유효세율에 대한 대체적인 측정치로 제안되고 있는 자본단위당 세금보조금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유효세율과 세금보조금의 비교는 법정세율의 인하와 세금보조금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1991년 전후하여 1987-90년과 1991-93년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유효세율과 세금보조금은 세금보조금을 표준화하는 변수의 차이일 뿐 상호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측정치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유효세율에 비해 세금보조금이 조세부담을 측정하는데 신뢰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신승묘(1997)²³⁾는 조세혜택액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 사이에 완전한 비례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유효법인세율은 조세혜택액 뿐만 아니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기업의 조세혜택이용 정도만을 반영하는 측정치가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유효법인세율 측정치에 미치는 조세혜택액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영향을 실증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유효법인세율은

20) G. M. Spooner, "Effective Tax Rates From Financial Statements", National Tax Journal, Vol 39. 1986.

21) 김용훈, "조세지원의 효과에 관한 연구 - 유효법인세율을 통한 분석", 세무학 연구 제7호. 1996.

22) 고종권, "조세부담의 측정치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회계학회 1997.

23) 신승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유효법인세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산업과 경영. 제10권 2호. 충북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1997.

조세혜택의 기업 간 차이를 반영하며 둘째, 조세혜택액이 양수(음수)인 경우에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클수록 유효법인세율이 크게(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유효법인세율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으로써 조세혜택이용 정도만을 반영하는 측정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법인세율에 미치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박규숙(1999)²⁴⁾은 조세혜택의 차이로 인해 유효세율이 기업별, 기간별, 산업별로 차이가 난다는 조세혜택가설을 우리나라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익과 조세혜택의 두 변수로 구성된 유효세율모형을 이용하여 1991년 세법 재정을 전후한 기간에 대한 유효세율의 변동을 측정하였으며, 조세혜택과 이익이 유효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아울러 1991년 세법개정의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효세율의 차이를 조세혜택의 차이로만 설명하는 조세혜택가설은 불완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세혜택만이 아닌 이익과 세율을 함께 고려한 경우가 유효세율의 예측력과 신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석영(2002)²⁵⁾은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한 유효법인세율(ETR1)과 전자공시상 감사보고서 자료를 이용한 개별기업의 실제납부법인세와 과세소득을 이용한 유효법인세율(ETR2)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ETR1과 마찬가지로 ETR2도 기업규모별, 산업별, 기간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동안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에 등재되어 있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ETR1과 ETR2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으며 ETR1이 실제납부 법인세와 과세소득을 대신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 기업규모, 연구개발집약도, 부채비율은 ETR2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설비자산집약도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수박형수 안종석(2003)²⁶⁾은 2001년부터 제기된 법인세율 인하논쟁과 관련하여 주요국의 법인세율 정책동향을 검토하고 유효세부담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한편 법인세율 정책의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유효세부담의 비교는 한계 유효세부담과 평균 유효세부담으로 구분되어 이루어졌으며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

24) 박규숙, “세법개정에 따른 유효세율 변동의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25) 조석영, “유효법인세율의 측정과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26) 김진수박형수안종석, “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 추이와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개편방향 - 법인세율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3.

수변화도 추정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우리나라의 세 부담은 국제자본시장에서 경쟁 대상이 되는 주변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며, 명목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의 투자결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한계 유효세부담을 인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감가상각제도 등 다른 제도들을 그대로 둔 채 법인세율 인하만으로 실질적인 세 부담을 주변 경쟁국들 수준으로 인하하려면 명목세율을 대폭 인하하여 20% 수준 또는 그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 셋째, 기업의 세부담 인하는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증가시키며 경제성장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넷째, 그러나 단기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은 상당히 크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촉진하여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려면 법인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다. 법인세 계산구조와 유효법인세율

세 부담 능력의 대응치로 과세표준,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매출총이익을 사용하였을 경우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세표준을 대응치로 사용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계산되기까지 반영된 각종 조세제도의 차이로 인한 세 부담의 차이가 아니라 과세표준 계산 다음의 과정에서 세 부담의 차이를 발생하게 하는 조세제도인 공제감면세액으로 인한 세 부담의 차이를 비교하게 된다.

둘째, 각 사업연도소득을 대응치로 사용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이 계산되기까지 반영된 각종 조세제도의 차이로 인한 세 부담의 차이가 아니라,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 다음의 과정에서 세 부담의 차이를 발생하게 하는 조세제도로 인한 세 부담의 차이를 비교하게 되는 것이다. 즉,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공제감면세액으로 인한 세 부담의 차이가 아니라,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 다음의 과정에서 세 부담의 차이를 발생하게 하는 조세제도로 인한 세 부담의 차이를 비교하게 되는 것으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공제감면세액으로 인한 세 부담의 차이를 비교하게 된다.

셋째,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대응치로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계산되기까지 반영된 각종 조세제도의 차이로 인한 세 부담의 차이가 아니라,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계산 다음과정에서 세 부담의 차이를 발생하게 하는 조세제도

로 인한 세 부담의 차이를 비교하게 되는 것이다. 즉,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공제감면세액으로 인한 세 부담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다.

넷째, 매출총이익을 대응치로 사용한 경우에는 매출총이익이 계산된 후 그 다음의 법인세 산출과정에서 세 부담의 차이를 발생하게 하는 조세제도의 차이로 인한 세 부담의 차이를 비교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매출총이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각종 조세제도로 인한 세 부담의 차이를 비교하게 되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도 이러한 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분모로 계산하는 유효법인세율은 부채의존도 등의 설명변수를 이용하여 기업의 실질적 조세 부담차이를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는 측정치라 하였다.²⁷⁾ 또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법인세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액의 출발점이 되는 이익측정치로서 조세지원제도와 세무조정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업 존속기간동안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합계는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과세표준의 합계와 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분모로 사용하는 경우의 유효법인세율은 법인의 수익 및 비용구조와는 관계없이 세제상의 혜택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영향을 끼치는 비용의 지출과 관련된 변수를 이용하는 연구에서는 매출총이익을 분모로 하는 유효법인세율을 적용해오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분모로 하는 유효법인세율을 적용해오고 있다.²⁸⁾

<표 2 - 2> ETR의 세 부담능력 대응치의 의미

| 법인세액 산출구조 | 세 부담 능력 대응치(분모) | 해 석 |
|--------------------------|--------------------|--|
|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 매출총이익 | 매출총이익 계산 다음의 과정에서 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만 분석대상이며, 세법상 각종 규정 및 조세지원제도 대부분과 기업의 수익구조까지도 분석대상임. |

27) 안숙찬, “조세부담과 기업특성”, 세무학연구, 제8호 한국세무학회, 1996.

28) 김진영, “기업특성이 유효법인세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 | |
|--|-------------|--|
| 매출총이익 -) 판매비와 관리비 = 영업이익 영업이익 | 영업이익 | 영업이익 계산 다음의 과정에서 세 부담에 미치는 요인만 분석대상이며, 세법상 각종 규정 중 판매비와 관리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됨. |
| ±) 영업외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계산다음의 과정에서 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만 분석 대상이며, 세무회계상 영향을 미치는 세법상 각종 규정만이 분석대상이 됨. |
| - 법인세비용 = 당기순이익 | 당기순이익 | 당기순이익 계산 다음의 과정에서 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만 분석대상. |
|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각 사업연도소득 | 각 사업연도소득 |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 다음의 과정에서 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만 분석대상이며,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감면등이 분석대상이 됨 |
| 각 사업연도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과세표준 | 과세표준 | 과세표준 계산 다음의 과정에서 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만 분석대상이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가 분석대상이 됨. |

제3절 법인세부담과 기업규모에 관한 선행연구

Zimmerman²⁹⁾은 정치적 비용과 기업규모, 산업분류와 유효법인세율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목적은 기업규모가 정치비용의 가시적 대리변수인가 여부를 분석하고 1947년부터 1981년까지의 유효법인세율을 중심으로 시계열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은 규모를 4단계로 나누어 산출하고 규모가 가장 큰 25%는 다시 50대 기업으로 세분화 하였다. 그 결과, 완전한 단조(單調)관계는 아니나 정(正)의 관

29) Zimmerman, J. L, "Taxes and Firm siz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 1983.

계가 기업규모와 유효법인세율 수준 사이에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관계는 석유산업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났다.

Porcano³⁰⁾는 1982년과 1983년의 평균유효법인세율 구조를 조사함으로써 법인세제의 공평성을 분석하였다. 유효법인세율은 미국 세전이익에 대해 당기납부 미국 연방법인세의 비율로 정의하였다. 세율구조는 역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기업이 가장 높은 유효법인세율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기업은 낮은 유효법인세율을 부담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평균유효법인세율은 법정세율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총매출액, 총자산, 자본적 지출 및 순이익 등 기업규모에 대한 4가지 상이한 측정치를 사용한 분석에 있어서도 유의하였다. 총자산이 사용될 때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조성표³¹⁾은 매출총이익에 대하여 유효법인세율과 준조세 및 이들을 합한 총 조세부담률을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1981년부터 1988년까지 8년간이며, 2,632개의 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Zimmerman과 유사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업규모를 매출액에 따라 상위 10%에 속하는 기업들은 초대규모기업군으로, 그 외의 기업들은 기타기업군으로 구분 분류하여 각 기업집단간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유효법인세율은 초대규모기업군이 조사대상기간에 걸쳐 기타기업군보다 낮게 나타났다. 준조세부담률에서는 초대규모기업군이 기타기업군보다 더 높은 부담률을 보였고 1981~1984년까지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유효법인세율과 준조세부담률의 합계인 총조세부담률에서 초대규모기업군이 기타 기업군보다 높은 부담률을 보였으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또한, 산업별로 법인세부담률을 조사한 결과 산업전반에 걸쳐 초대규모기업군이 기타기업군보다 더 낮은 부담률을 보였으며, 특히 생산자재조업과 도소매업에서 법인세부담률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조성하와 정규언³²⁾은 1982-1989년의 KIS-FAS 자료를 이용하여 Zimmerman과 유사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업을 대규모기업, 중대규모기업, 중소기업, 소규모기업 등 4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여 법인세부담률, 기부금부담률, 점

30) Porcano, "Corporate Tax Rates : Regressive, Proportional or Regressive",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986.

31) 조성표, "우리나라 기업의 정치적 비용에 관한 실증연구 : 명시적 조세와 암묵적 조세를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10호, 1990.

32) 조성하-정규언, "기업규모와 정치적 비용: 정치적 비용가설의 검증", 고려대학교 경영연구, 제26권 제2호, 1992.

대비부담률, 조세공과비율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매출총이익에 대한 법인세부담률은 중소기업, 중대규모, 대규모, 기업 순으로 높았으며, 소규모기업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규모가 증가할수록 기부금비율이 감소하였으며, 소규모기업에서 대규모기업으로 갈수록 높은 접대비비율을 보였다. 조세공과는 자산총액에 대한 비율을 분석하였으며, 기업규모가 클수록 조세공과비율이 높다는 결론을 얻었다. 기부금은 세무 상의 손금한도에 대한 비율과 매출총이익에 대한 기부금비율로 분석되었는데 그 결과, 기업규모가 증가할수록 기부금비율이 감소하였다. 또한 접대비는 세무상의 손금한도에 대한 접대비비율과 매출액에 대한 접대비비율로 분석하였는데 소규모기업에서 대규모기업으로 갈수록 높은 접대비비율을 보였다. 또한 조세공과는 자산총액에 대한 비율로 분석하였으며, 기업규모가 클수록 조세공과비율이 높다는 결론을 얻었다.

권순철·권순창³³⁾의 유효법인세율 연구는 우리나라 상장기업에 대한 규모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상장회사 Date Base를 이용하였다. 규모변수들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매출액과 총자산을 변수로 선택하여 각 규모변수와 유효법인세율간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규모변수인 매출액과 두 가지 유효법인세율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매출액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대비 법인세와 매출총이익대비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자산과 두 가지 유효법인세율에 대한 회귀분석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두 가지 유효법인세율 모형에 의한 법인세부담률과 두 가지 규모변수에 의해 구분된 각 기업군과의 ANOVA 및 DUNCAN 분석 결과로, 각 유효세율 모형의 적용에 따라 각 기업군의 법인세부담률의 순위가 상이하게 나타나 규모가설이 입증되지 않았다.

노현섭·정문현³⁴⁾는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전체 상장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규모(매출액)와 유효법인세율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대기업과 유효세율이 소기업의 유효세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현섭³⁵⁾은 대체적 유효세율 정의, 표본선택절차(데이터베이스와 표본기간), 기업규모 대리변수와 자료집계방법의 차이와 같은 실증절차에 있어서 차이가 연구결과에

33) 권순철·권순창, “상장기업의 유효법인세율에 관한 검토”, 세무학연구 제5호, 1993년.

34) 노현섭·정문현, “기업규모와 유효세율간의 관계 : 정치적 비용가설과 조세혜택가설의 검증”, 세무학연구, 제6호, 1995.

35) 노현섭, “상장제조기업의 유효세율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제15호, 대한경영학회, 1997.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는데, 대체적인 실증절차가 연구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4절 법인세부담과 기업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Sigfried³⁶⁾는 1963년도에 110개 소산업을 대상으로 유효법인세율이 산업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산업지수를 이용한 실증분석결과 유효법인세율이 산업별로 크게 차이가 나며, 이러한 차이는 대부분 투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자본이득 그리고 비율감모상각(percentage depletion)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집약적인 산업의 유효법인세율보다 낮았다.

Stickey and McGee³⁷⁾는 유효법인세율과 기업특성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주요 미국기업들의 유효법인세율이 기업규모, 자본집약도, 해외영업활동비중, 천연자원개발 산업과 관련 정도 및 부채비율 관련이 있는가를 알아봄으로써 법인세의 중립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연방 외국 주납세액 및 지방세를 장부상의 세전이익으로 나눈 하나의 유효법인세율에 대해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부채비율과 자본집약도 및 천연자원개발사업과의 관련정도는 유효법인세율과의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해외영업활동비중과 기업규모는 유효법인세율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기·안숙찬³⁸⁾은 Stickey and Maclee의 논문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해 6가지의 유효법인세율을 구하였으나 실제 분석에서는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를 세전순이익과 감가상각비의 합으로 나눈 하나의 측정치만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수출비율, 자본집약도, 부채비율과 기술투자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낮아지며 산업별로도 유효법인세율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나 규모는 유효법인세율과의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박규일·김영태·남복우³⁹⁾는 비상장기업 393개 기업을 대상으로 유효세율이 기업규

36) J. Siegfried, "Effective Average U. S. Corporate Income Tax Rates", National tax Journal, 1974.

37) Stickey, C. P. and V. E McGee, "Effective corporate tax rate—the effect of size, capital intensity, leverage, and other factors", The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1982.

38) 김성기·안숙찬, "유효법인세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영논집 제12호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1994.

모, 매출액, 부채비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유효세율 중 경제적 유효세율만이 기업특성변수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규모가 클수록(일반 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그리고 외부감사기업이 비외부감사기업에 비해) 유효세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유효세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성·노현섭·김영욱⁴⁰⁾의 연구에서는 평균유효세율과 기업규모, 기업의 자본구조와 자산구성간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나타내었다. 연구모형에서 종속변수인 유효법인세율은 기업의 당기 법인세 납부액을 매출총이익으로 나누어 정의하였다. 그리고 설명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기업의 재무의사결정(financing decision, 즉 자본구조)을 포착하기 위한 대리변수는 레버리지(LEV)를 사용하였다. LEV는 고정자산구성의(asset mix)의 대리변수로 자본집약도(CAPINT), 재고집약도(INVINT) 및 연구개발집약도(RNDINT)라는 세 변수를 사용하였다. 즉, 수익성(profitability)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산수익률(return on asset : ROA)을 포함시켰다. 자산수익률(ROA)은 세전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유효법인세율의 측정치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측정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전체표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전반적으로 유효법인세율이 기업규모, 자본구조, 자산구성과 수익성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기업별 특성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규안·오웅락⁴¹⁾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 동안 거래소 기업과 코스닥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규모, 부채비율, 수출비율, 자본집약도 등의 기업특성이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거래소기업의 경우 대규모기업과 중규모기업의 조세부담이 소규모기업과 초대규모기업의 조세부담보다 높으며, 코스닥기업은 초대규모기업의 조세부담이 다른 기업군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유효세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정책이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이 유효세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비율과 자본집약도가 높은 기업은 정부의 수출과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정책으로 유효이자율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9) 박규일·김영태·남복우, “비상장법인의 유효세율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세무학회, 2001.

40) 이재성·노현섭·김영욱, “유효법인세율 변동성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회계정보연구 제18권, 2002.

41) 전규안·오웅락, “거래소 기업과 코스닥 기업의 특성과 조세부담”, 세무학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세무학회, 2003.

제 3 장 연구설계

제1절 연구가설의 설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부담측정치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를 통해 기업이 부담하는 실질적인 유효법인세율이 기법별로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할 기업특성의 변수로서 ① 기업규모(SIZE) ② 자본집약도(CAPINT) ③ 연구개발집약도(RNDINT) ④ 부채비율(DEBT) ⑤ 자산수익률(ROA) ⑥ 유형자산투자비율(INVTPM) 등을 선정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변수들이 조세부담 측정치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1. 기업규모(SIZE)

기업규모와 조세부담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견해가 있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많은 정치적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정치적 비용가설(political cost hypothesis)에 입각하여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조세부담이 증가한다는 견해⁴²⁾와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적극적인 조세전략을 통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조세부담이 적어진다는 견해⁴³⁾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규모와 유효세율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양하다. 박규일 외(2001)와 전규안 외(2003)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유효법인세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이재성 외(2002)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유효세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가 있으며, 최저한세의 경우에도 중소기업과 일반기업 그리고 일반기업도 그 규모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42) Zimmerman J. L, "Tax and firm siz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 1983.

43) Porcano, "Corporate Tax Rates : Regressiva, Proportional or Regressive", September of National Tax Journal, 1982.

가설1. 기업규모가 클수록 유효법인세율은 커진다.

2. 자본집약도(CAPINT)

정부에서는 설비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법에서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투자에 대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동법 제25조(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동법 제27조(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동법 제28조(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규정이 있으며,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특별상각을 인정해서 감가상각비의 조기인식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이 법인세를 미래로 이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성기와 안숙찬(1994), 그리고 전규안(1997)의 연구에서도 자본집약적 사업의 유효법인세율이 노동집약적 사업의 유효법인세율보다 낮았다. 따라서 자본집약적 생산구조를 갖는 기업은 노동집약적 생산구조를 갖는 기업보다 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각종 조세지원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즉, 자본집약도가 클수록 감가상각으로 인한 감세효과가 커서 기업의 법인세부담은 감소할 것이다. 조덕영(2002)에서는 설비자산집약도가 유효법인세율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재성 외(2002)와 전규안 외(2003)에서는 자본집약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유효세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 자본집약도가 큰 기업일수록 유효법인세율은 낮아질 것이다.

3. 연구개발집약도(RNDINT)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그 효익이 장기간에 걸쳐 실현되는 반면 즉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전형적인 투자관련 감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금액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금액은 개발비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개발비 과목으로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경상개발비의 과목으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⁴⁴⁾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 R&D)은 기업의 성장·발전에 중요한 활동영역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정부는 기업이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장려하기 위해 조세 특례제한법에서는 기술 및 인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조세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2005년 3월 법인세 신고 시부터 연구 및 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에 대하여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조덕영(2002) 및 이재성 외(2002)에서도 연구개발집약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유효세율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투자비용이 높은 기업은 이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인하여 조세부담이 감소할 것이다.

가설3. 연구개발집약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유효법인세율은 낮아질 것이다.

4. 부채비율(DEBT)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다른 실체에게 미래에 자산이나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타인자본 사용에 대한 대가인 지급이자 손금산입되는 반면 자기자본 사용에 대한 대가인 배당은 손금불산입되는 것이다.

박규일 외(2001)에서는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이 유효세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규안 외(2003)에서는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이 유효세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덕영(2002)에서는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이 유효법인세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부채를 더 많이 사용하는 기업일수록 즉, 부채비율이

44)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

높을수록 기업의 조세부담은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4.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유효법인세율은 낮아질 것이다.

5. 자산수익률(ROA)

자산수익률은 손익계산서에서 세금차감 후 순이익을 평균총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ROA는 순이익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과 비용을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를 보여 준다. 또한 얼마나 효과적으로 유가증권,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 등과 같은 자산들을 잘 운용했는지를 나타낸다. ROA는 회사의 수익이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을 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판단할 수 있게 한다. 만약 수익은 상승하는데 ROA는 하락한다면 그것은 자산이 수익보다 더 빨리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즉, 회사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했다는 뜻이 된다. ROA는 자회사와 경쟁회사와 비교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수익범위와 현금 흐름은 회사 간에 다양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ROA는 주어진 총자산 범위에서 한 회사가 얼마나 수익을 올리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ROA가 증가한 기업은 유효법인세율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5. 자산수익률이 높을수록 유효법인세율은 높아질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모형

기업특성변수들로 인하여 법인세부담율이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중심과제이다. 그러므로 법인세부담측정치인 유효법인세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하며 기업특성변수인 기업규모(SIZE), 자본집약도(CAPINT), 연구개발집약도(RNDINT), 부채비율(DEBT), 자산수익률(ROA), 유형자산투자비율(INVTPM)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법인세부담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연구모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TR1_i = a_0 + a_1 X_{1i} + a_2 X_{2i} + a_3 X_{3i} + a_4 X_{4i} + a_5 X_{5i} + a_6 X_{6i}$$

단, ETR1 = 기업i의 유효법인세율(법인세비용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X_{1i} = 기업i의 기업규모(SIZE)

X_{2i} = 기업i의 자본집약도(CAPINT)

X_{3i} = 기업i의 연구개발집약도(RNDINT)

X_{4i} = 기업i의 부채비율(DEBT)

X_{5i} = 기업i의 자산수익률(ROA)

X_{6i} = 기업i의 유형자산투자비율(INVTPM)

$$ETR2_i = a_0 + a_1 X_{1i} + a_2 X_{2i} + a_3 X_{3i} + a_4 X_{4i} + a_5 X_{5i} + a_6 X_{6i}$$

단, ETR2 = 기업i의 유효법인세율(법인세비용 / 당기순이익)

X_{1i} = 기업i의 기업규모(SIZE)

X_{2i} = 기업 i 의 자본집약도(CAPINT)

X_{3i} = 기업 i 의 연구개발집약도(RNDINT)

X_{4i} = 기업 i 의 부채비율(DEBT)

X_{5i} = 기업 i 의 자산수익률(ROA)

X_{6i} = 기업 i 의 유형자산투자비율(INVTPM)

제3절 변수의 정의

1. 법인세부담율의 측정

본 연구에서 법인세부담은 유효세율(effective tax rates, 이하 ETR)로 측정하고자 한다. ETR은 세제의 효율성과 공평성에 관심을 갖는 연구자들과 조세정책 입안자들이 조세부담의 측정치로 많이 사용해왔다. ETR은 영업성과 대비 법인세의 비중을 나타내는 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었다. ETR을 측정하는 산식은 분자와 분모로 무엇을 이용하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분자의 법인세는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로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등을 이용할 수 있고 당해 연도소득에 실제로 납부한 법인세가 될 수 있다. 실제 납부한 법인세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정확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기업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납부한 법인세액이나 세무조정에 대한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시 말하면 손익계산서상에 계산된 법인세 또는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에 차기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추납액 및 환급액을 가감하여 조정 후 법인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분모로는 이익의 대용치로서 영업이익, 매출총이익, 당기순이익,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종속변수를 2개로 사용하였다. 첫째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 두 번째로 당기순이익을 이용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분자로는 손익계산서상에 계상된 법인세비용을 사용하였고 분모로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사용하였다. 산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ETR1 = \frac{\text{법인세비용(손익계산서)}}{\text{법인세차감순이익(손익계산서)}}$$

$$ETR2 = \frac{\text{법인세비용(손익계산서)}}{\text{당기순이익(손익계산서)}}$$

전규안(1997)의 연구에서는 영업흐름의 대응치로서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매출총이익을 사용하였으며, 안숙찬(1996)의 연구에서는 영업현금흐름의 대응치로 매출총이익을 사용하였다. 유효법인세율 계산시 분모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⁴⁵⁾으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세무조정외의 출발점이 되는 이익측정치로서 조세지원제도가 없다면 기존 존속기간 동안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합계는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과세표준의 합계와 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분모로 하는 법인세율은 김용훈(1996), 노협섭과 정문현(1995), 이준규(1992), Stickney와 McGee(1982)등에서 조세특례의 유효성 연구나 유효세율의 선택연구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분모로 하여 계산되는 유효법인세율은 부채비율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기업의 실질적 조세부담 차이를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에는 적절하지 않다. 최근 연구들은 유효법인세율 측정치로 유효법인세율을 사용하는데 신뢰성과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Wilkie & Limberg는 Wilkie의 연구를 확장하여 유효법인세율의 함수적 이상 현상에 대해 비판을 근거로 유효법인세율 측정치로써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조세혜택을 더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세제상보조금 대 자기자본 비율이 입수가능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유효법인세율 보다 더 우월하다는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전규안(1997)의 연구에서 유효법인세율과 세제상보조금 대 자기자본비율을 이용한 분석간에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45) 안숙찬, “조세부담과 기업특성”, 세무학연구 제8권, 1996.

2. 설명변수의 측정

1) 기업규모(SIZE)

기업규모변수는 총자산, 매출액, 고정자본의 시가(보통주의 시가와 우선주·고정부채의 장부가액의 합), 보통주의 시가, 종업원 수 등이 일반적이다. Porcano(1986)는 총자산, 매출액, 보통주의 시가, 세전이익을 규모대리변수를 이용한 기업규모와 유효법인세율간의 관계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가장 강하고 일관된 결과는 총자산을 이용할 때였다고 보고 하였다. 조성표(1990)도 유효법인세율과 규모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에서 총자산이 규모의 측정치로 매출액보다 적합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규에서 규모의 기준으로 매출액보다 총자산을 사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외에 Stickney와 McGEE(1982), Wang(1991), 노현섭과 정문헌(1995), 안숙찬(1996), 전규안(1997)등이 규모의 대리변수로는 총자산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총자산의 규모를 통하여 규모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text{기업규모(SIZE)} = \text{총자산의 자연로그}$$

2) 자본집약도(CAPINT)

자본집약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총감가상각대상자산 또는 순감가상각대상자산을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을 사용하는 경우와 감가상각비 또는 총감가상각대상자산을 종업원 수로 나눈 값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김성기와 안숙찬(1994), 안숙찬(1996)은 유형고정자산순액에서 건설가계정을 차감한 금액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사용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세법상의 조세해택이 감가상각대상자산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전규안(1997)의 논문에서 사용된 순유형고정자산에서 토지와 건설가계정을 차감한 금액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을 자본집약도로 사용하였다.

$$\text{자본 집약도(CAPINT)} = (\text{유형자산} - \text{토지} - \text{건설중인자산}) / \text{총자산}$$

3) 연구개발집약도(RNDINT)

연구개발집약도는 기업의 연구개발비를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정의하며, 여기서 연구개발비는 당기에 비용 처리된 부분과 무형자산으로 인식된 부분을 합한 것으로 정의한다. (권순창·김형국·채종화, 2004)

$$\text{연구개발집약도(RNDINT)} = \text{연구개발비(RND)}^{46}) / \text{매출액}$$

4) 부채비율(DEBT)

부채비율은 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을 말하는데 이때 분자에 사용되는 부채는 총 부채 또는 고정부채를 사용할 수 있으며, 분모로 사용되는 자본에는 총자본 또는 자기자본을 사용하였는데 선행연구에서도 여러 가지 부채비율이 사용되었는데 이재성 외(2002) 등의 연구에서는 고정부채를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김문태 외(2006)에서 사용한 부채비율을 사용하였다.

$$\text{부채비율(DEBT)} = \text{총부채} / \text{총자산}$$

46) 당기말개발비+당기개발비상각액-전기말개발비+경상연구개발비+연구비+경상개발비

5) 자산수익률(ROA)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영업활동에 사용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자산수익률이다. 이러한 자산수익률(ROA)에 따라서 기업의 세 부담과 경영활동이 달라진다.

$$\text{자산수익률(ROA)} = \text{당기순이익} / \text{당기총자산}$$

6) 유형자산투자비율(INVTPM)

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전통적인 투자의 개념으로서 토지를 제외한 기계, 설비, 비품 등의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유형자산투자비율(INVTPM)로 측정된다. 구체적으로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의 증감 액을 전기의 유형자산으로 나눈 비율을 사용하였다.

$$\text{유형자산투자비율(INVTPM)} = (\text{기말유형자산} - \text{기초유형자산} + \text{감가상각비}) / \text{기초유형자산}$$

다음의 <표 3 - 1>은 지금까지 사용한 변수를 요약한 것이다.

<표 3 - 1> 변수 요약

| 변수명 | 내용 | 계산식 | 비교 |
|--------|----------|---|-------|
| ETR1 | 유효법인세율 | 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
| ETR2 | 유효법인세율 | 법인세비용/당기순이익 | |
| SIZE | 기업규모 | 총자산의 자연로그 | |
| CAPINT | 자본집약도 | (유형자산-토지-건설중인자산)/총자산 | |
| RNDINT | 연구개발집약도 | 연구개발비/매출액 (연구개발비=당기말개발비+당기개발비상각액-전기말개발비+경상연구개발비+연구비+경상개발비) | |
| DEBT | 부채비율 | 총부채/총자산 | |
| ROA | 자산수익률 | 당기순이익/당기총자산 | |
| INVTPM | 유형자산투자비율 | (기말유형자산-기초유형자산+감가상각비)/기초유형자산 | 토지 제외 |

제4절 표본기업의 선정

본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한 자료는 2010년 한국신용평가(주)의 데이터베이스인 KIS-VALUE에 수록되어 있는 각 기업의 재무제표 자료에서 추출하였다. 표본기업은 2003-2009년도까지 계속 상장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1)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하여 상장 중인 기업.⁴⁷⁾

2) 결산일이 12월 31일인 기업

12월 결산 기업만을 표본으로 한정하는 것은 결산 월이 다른 경우에 다른 세법규정이 적용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와 유효법인세율 등의 계산시 어느 연도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되어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3) 금융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

금융업 등에 속하는 기업은 일반산업과 영업환경, 자산구조, 조세지원 및 회계처리 등이 다르며 금융기관의 재무제표가 일반 기업과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일반제조기업과 금융기관의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양(+)인 기업.

유효법인세율을 계산할 때 분모로 사용되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또는 매출총이익이 음(-)이거나 0이면 유효법인세율이 음이 되거나 무한대가 되어 해석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47) 본 연구의 대상기간은 2003년에서 2009년이지만 분석을 위해서 2002년도 자료가 필요하다.

5) 법인세비용이 음(-)이 아닌 기업.

유효법인세율을 계산할 때 분자로 사용되는 법인세비용이 음(-)인 경우에는 유효법인세율이 음(-)이 되어 해석이 곤란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유효법인세율이 0보다 적거나 1보다 크지 않는 기업.

유효법인세율이 0보다 작거나 1보다 큰 경우에는 그 해석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표본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⁴⁸⁾

7) 변수의 측정에 필요한 자료가 없거나 누락되지 않는 기업.

변수의 측정에 필요한 자료가 없거나 누락된 기업은 연구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표본에서 제외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표본의 수는 <표 3 - 2>과 같다.

<표 3 - 2> 표본기업의 선정과정

| 표본선정단계 | 내 용 | 표본 수 |
|---------|------------------------------|---------------------|
| 최초표본 | 전체 상장 제조기업 | 4011 |
| |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이 양(+)이 아닌 기업 | 693 |
| 1차 제거표본 | 당기순이익이 양(+)이 아닌 기업 | 26 |
| | 법인세비용이 음(-)이 아닌 기업 | 487 |
| 2차 제거표본 | 유효법인세율이 0보다 적거나 1보다 적지 않은 기업 | 0 ⁴⁹⁾ |
| 최종표본 | | 2805 ⁵⁰⁾ |

48) ETR이 1을 초과하는 경우는 대부분 분모인 세전이익 너무 적은 경우이다. ETR의 분모 값이 너무 적어서 ETR의 값이 너무 크게 나타나면 ETR추정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표본기업의 ETR을 0% ~ 100% 구간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론은 Gupta & Newerry(1997), 조덕영(2002) 등의 연구에서도 사용되었다.

49) ETR2제거시 123개입.

50) ETR2인 경우 2682개입.

참고로 표본기업을 연도별-산업별로 분류하면<표 3- 3>과 같다.⁵¹⁾

<표 3 - 3 > 표본의 연도별-산업별 분포

| 산업 (코드)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소계 | 비율 |
|------------------------------|------|------|------|------|------|------|------|-----|-------|
| 어업 | 2 | 4 | 4 | 3 | 3 | 3 | 4 | 23 | 0.82 |
| 식료품 제조업 | 20 | 23 | 18 | 19 | 22 | 15 | 22 | 139 | 4.96 |
| 음료 제조업 | 4 | 4 | 4 | 4 | 4 | 2 | 5 | 27 | 0.96 |
| 담배 제조업 | 1 | 1 | 1 | 1 | 1 | 1 | 1 | 7 | 0.25 |
|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외 | 5 | 5 | 6 | 3 | 3 | 0 | 6 | 28 | 1.00 |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10 | 7 | 9 | 9 | 8 | 7 | 8 | 58 | 2.07 |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2 | 2 | 2 | 2 | 2 | 2 | 2 | 14 | 0.50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 3 | 3 | 1 | 1 | 1 | 0 | 2 | 11 | 0.39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12 | 12 | 10 | 9 | 8 | 8 | 12 | 71 | 2.53 |
| 코르크,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4 | 4 | 4 | 4 | 4 | 4 | 4 | 28 | 1.00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40 | 44 | 42 | 44 | 45 | 37 | 44 | 296 | 10.55 |
|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25 | 24 | 25 | 26 | 24 | 27 | 27 | 178 | 6.35 |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11 | 10 | 12 | 10 | 10 | 6 | 11 | 70 | 2.50 |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9 | 18 | 16 | 15 | 12 | 11 | 14 | 105 | 3.74 |
| 1차 금속 제조업 | 28 | 28 | 27 | 31 | 32 | 25 | 25 | 196 | 6.99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8 | 6 | 7 | 8 | 9 | 5 | 6 | 49 | 1.75 |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18 | 17 | 20 | 19 | 22 | 17 | 18 | 131 | 4.67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2 | 2 | 2 | 2 | 2 | 1 | 2 | 13 | 0.46 |
| 전기장비 제조업 | 7 | 8 | 9 | 11 | 11 | 10 | 11 | 67 | 2.39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16 | 18 | 18 | 20 | 19 | 15 | 17 | 123 | 4.39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26 | 25 | 23 | 24 | 27 | 23 | 23 | 171 | 6.10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5 | 4 | 4 | 5 | 5 | 4 | 4 | 31 | 1.11 |
| 가구 제조업 | 3 | 3 | 2 | 3 | 3 | 3 | 2 | 19 | 0.46 |
| 기타 제품 제조업 | 0 | 0 | 0 | 0 | 0 | 0 | 1 | 1 | 0.04 |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11 | 11 | 11 | 10 | 11 | 10 | 10 | 74 | 2.64 |
| 종합 건설업 | 25 | 26 | 28 | 29 | 31 | 27 | 24 | 190 | 6.77 |
| 전문직별 공사업 | 3 | 3 | 3 | 3 | 3 | 3 | 3 | 21 | 0.75 |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1 | 1 | 1 | 1 | 1 | 0 | 0 | 5 | 0.18 |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18 | 17 | 19 | 18 | 22 | 18 | 18 | 130 | 4.63 |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9 | 9 | 10 | 10 | 11 | 11 | 11 | 71 | 2.53 |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8 | 7 | 8 | 6 | 8 | 5 | 7 | 49 | 1.75 |

51) 한국신용평가(주)의 중분류기준에 따라 산업을 분류하였음.

| | | | | | | | | | |
|----------------------------|------------|------------|------------|------------|------------|------------|------------|--------------|------------|
| 수상 운송업 | 4 | 6 | 6 | 5 | 4 | 3 | 0 | 28 | 1.00 |
| 항공 운송업 | 0 | 2 | 2 | 2 | 3 | 0 | 0 | 9 | 0.32 |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2 | 2 | 2 | 2 | 3 | 2 | 1 | 14 | 0.50 |
| 음식점 및 주점업 | 1 | 1 | 1 | 1 | 1 | 1 | 1 | 7 | 0.25 |
| 출판업 | 5 | 4 | 5 | 5 | 5 | 5 | 5 | 34 | 1.21 |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2 | 2 | 2 | 2 | 2 | 2 | 1 | 13 | 0.46 |
| 방송업 | 1 | 1 | 1 | 1 | 1 | 1 | 1 | 7 | 0.25 |
| 통신업 | 3 | 3 | 3 | 2 | 3 | 3 | 3 | 20 | 0.71 |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3 | 2 | 3 | 2 | 4 | 3 | 4 | 21 | 0.75 |
| 정보서비스업 | 2 | 2 | 2 | 2 | 2 | 2 | 2 | 14 | 0.50 |
| 부동산업 | 1 | 0 | 0 | 1 | 1 | 1 | 1 | 5 | 0.18 |
| 전문서비스업 | 24 | 27 | 29 | 25 | 26 | 16 | 17 | 164 | 5.85 |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4 | 4 | 4 | 5 | 5 | 5 | 5 | 32 | 1.14 |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0 | 0 | 0 | 0 | 1 | 0 | 0 | 1 | 0.04 |
| 사업지원 서비스업 | 4 | 4 | 4 | 4 | 3 | 2 | 3 | 24 | 0.86 |
| 교육 서비스업 | 1 | 1 | 1 | 1 | 1 | 1 | 1 | 7 | 0.25 |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2 | 1 | 2 | 1 | 1 | 1 | 1 | 9 | 0.32 |
| 총합계 | 405 | 408 | 413 | 411 | 430 | 348 | 390 | 2,805 | 100 |

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제1절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1. 기술통계량

<표 4 - 1> ETR 기술통계량

| 구분 | ETR1 | ETR2 | SIZE | CAPINT | DEBT | RNDINT | ROA | INVTM |
|------|-------|---------|--------|--------|-------|--------|-------|----------|
| 평균 | 0.263 | 0.632 | 26.543 | 0.192 | 0.422 | 0.008 | 0.063 | 0.108 |
| 표준편차 | 0.123 | 7.632 | 1.488 | 0.136 | 0.180 | 0.023 | 0.048 | 4.765 |
| 분산 | 0.015 | 58.252 | 2.215 | 0.018 | 0.032 | 0.001 | 0.002 | 22.705 |
| 최소값 | 0.001 | 0.001 | 22.820 | 0.000 | 0.010 | -0.040 | 0.000 | -239.741 |
| 최대값 | 0.997 | 391.548 | 32.086 | 0.898 | 0.942 | 0.630 | 0.436 | 42.964 |
| 표본수 | 2805 | 2805 | 2805 | 2805 | 2805 | 2805 | 2805 | 2805 |

기업특성변수에 따른 유효법인세율을 분석하기 전에 표본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 표본기업들에 각 유효법인세율의 평균값, 표준편차, 분산, 최소값, 최대값, 관측개수를 측정하였다. 유효법인세율의 대응치를 사용해 분자에는 손익계산세상의 법인세 등을 사용하였으며, 분모에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ETR1)과 당기순이익(ETR2)을 사용하였다.

유효법인세율의 분모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ETR1)을 사용할 경우보다 당기순이익

(ETR2)을 사용할 경우 값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고 이는 유효법인세율 사용 시 대응치의 선택에 따라 값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다양한 측정방법이 요구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유효법인세율을 어떤 대응치로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다르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유효법인세율의 분자로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등을 사용하는 것은 기업의 실제 법인세부담율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비교할 경우 분자는 같다고 하더라도, 분모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 이는 세제상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매출원가의 발생으로 인해 이익이 적어지고 이익에 비해 많은 비용이 발생하므로, 대응치에 따라 연구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대응치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인세부담율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표 4 - 2>와 <표 4 - 3>는 ETR과 설명변수간의 Pearson 상관분석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ETR1과 ETR2에서 유의수준 1%이내에서 CAPINT, DEBT, ROA가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으로 두 변수의 상관계수가 0.7부터 0.8 상일 때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표 4 - 2 >와 <표 4 -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상관계수가 0.229가 가장 높은 수치이므로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⁵²⁾이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다.

분석결과 자본집약도(CAPINT)와 ETR1과 ETR2의 상관관계가 음(-)의 관계가 나타남으로 자본집약도가 큰 기업일수록 유효법인세율은 낮아질 것이라는 가설2는 채택되어진다. 부채비율(DEBT)은 ETR1과 ETR2의 상관관계가 양(+)의 관계가 나타났는데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유효법인세율은 낮아질 것이라는 가설4와는 반대의 영향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자산수익률(ROA)은 ETR1과 ETR2의 상관관계가 음(-)의 관계가 나타나 자산수익률이 높을수록 유효법인세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5와는 반대의 영향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나머지 변수인 기업규모(SIZE), 연구개발집약도(RNDINT), 유형자산투자비율비율(INVTPM)와는 유의적인 관계가 없었다.

52) 다중공선성이(Multicollinearity)란 2개 또는 그 이상의 독립변수가 서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말한다. 이들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면 회귀계수의 추정량의 분산이 급속히 확대되어 신뢰성이 떨어지며,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표 4 - 2> ETR1 상관분석

| | | ETR1 | SIZE | CAPINT | DEBT | RNDINT | ROA | INVTPM |
|---------------|--------|---------|--------|---------|---------|--------|-------|--------|
| Pearson 상관 | ETR1 | 1 | | | | | | |
| | SIZE | -.008 | 1 | | | | | |
| | CAPINT | -.081** | .179** | 1 | | | | |
| | DEBT | .132** | .229** | .188** | 1 | | | |
| | RNDINT | -.011 | .012 | -.054** | -.083** | 1 | | |
| | ROA | -.267** | -.024 | -.074** | -.276** | .007 | 1 | |
| | INVTPM | .013 | .002 | .019 | .043* | .007 | -.004 | 1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표 4 - 3> ETR2 상관분석

| | | ETR2 | SIZE | CAPINT | DEBT | RNDINT | ROA | INVTPM |
|---------------|--------|---------|--------|---------|---------|--------|--------|--------|
| Pearson 상관 | ETR2 | 1 | | | | | | |
| | SIZE | -0.011 | 1 | | | | | |
| | CAPINT | -.087** | .174** | 1 | | | | |
| | DEBT | .103** | .227** | .194** | 1 | | | |
| | RNDINT | -0.017 | 0.014 | -.055** | -.085** | 1 | | |
| | ROA | -.186** | -0.027 | -.087** | -.270** | 0.006 | 1 | |
| | INVTPM | 0.017 | 0.003 | 0.019 | .045* | 0.007 | -0.005 | 1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제2절 회귀분석결과

기업별 유효법인세율을 종속변수로 하며, 기업규모, 자본집약도, 부채비율, 연구개발집약도, 자산수익률, 유형자산투자비율 등의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한 ETR1(손익계산서 법인세등/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결과와 ETR2(손익계산서 법인세등/당기순이익)의 결과를 <표 4 - 4>에 제시하였다.

ETR1와 ETR2를 분석한 결과 전체분석대상기간에 걸쳐 조세부담측정치와 기업특성간의 관계를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중 자본집약도, 부채비율, 자산수익률은 1%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자본집약도는 예상부호와 일치하였고, 부채비율과 자산수익률은 예상부호와 반대적 나타났다.

회귀계수 중 가장 유효한 변수로서는 자본집약도(CAPINT), 자산수익률(ROA), 부채비율(DEBT)이다. 먼저 자본집약도(CAPINT)를 설명하면 자본집약도(CAPINT)의 경우 t값이 -6.0830, p값이 0.0000로 통계적으로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본집약도가 높을수록 즉,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본집약적인 기업일수록 유효법인세율이 낮다는 것은 조세지원이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킬 만큼 충분히 시행되었거나 조세 자체의 성격상 기업투자의 수익률을 낮추는 경제적 효과가 있어 투자에 효과를 주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이재성 외(2002)와 전규안오용락(2003)의 일치한다.

이익의 대응치로 자산수익률(ROA)의 경우에는 t값이 -13.3532, p값이 0.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산수익률(세전이익/총자산)이 높을수록 즉, 세전이익이 커질수록 유효법인세율(법인세비용/세전이익)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인세율이 2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표준 구간의 차이가 작아서 이익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넘어서 커질 경우에는 누진효과가 거의 없어지고 이익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보다 적극적인 조세전략을 사용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부채비율(DEBT)의 경우 t값이 4.4273, p값이 (0.000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업의 자본구조가 ETR에 영향을 미치며 한계세율이 높은 기업이 차입금을 더 많이 사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재성 외(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예상부호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이유로는 안숙찬(1996)의 경우에는 유효법인세율 계산 시 분모로 매출총이익을 이용한 반면 본 논문에서는 전규안(1997)의 논문에

서 사용한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항목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머지 기업특성의 회귀변수를 설명하면, 먼저 기업규모(SIZE)에 따른 선행연구에서는 기업규모와 유효법인세율간의 관계에 양(+)의 관계를 가진다는 결과와 기업규모와 유효법인세율간의 관계에는 음(-)의 관계를 가진다는 결과가 있었으나 연구결과 기업규모와 유효법인세율 간에는 유의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Stickney & McGee(1982)와 안숙찬과 김성기(1994), 최강득(1997)의 논문과 같은 결과이다. 연구개발집약도(RNDINT)는 통계적으로 유의한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회계기준의 연구개발비의 비용처리 또는 자산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

<표 4 - 4>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 설명변수 및 통계량 | 예상부호 | ETR1 | ETR2 |
|-------------------|------|-------------------------|------------------------|
| 절편 | | 8.2049 (0.0000) | 7.5900 (0.0000) |
| SIZE | + | -0.7324 (0.4640) | -0.6650 (0.5061) |
| CAPINT | - | -6.0830 (0.0000)** | -5.9928 (0.0000) ** |
| DEBT | - | 4.4273 (0.0000) ** | 3.8707 (0.0001)** |
| RNDINT | - | -0.4199 (0.6746) | -0.8272 (0.4082) |
| ROA | + | -13.3532 (0.0000) ** | -8.9394 (0.0000) ** |
| INVTPM | - | 0.5562 (0.5782) | 0.7904 (0.4294) |
| R Square | | 0.0879 | 0.0032 |
| Adjusted R Square | | 0.0860 | 0.0011 |
| F값 | | 44.9485 | 24.2146 |
| 표본수 | | 2805 | 2628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의 값은 P값임.

제 5 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모든 기업은 과세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규정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 세액을 산출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다양한 조세지원제도 및 감면과 기업회계기준과 세법과의 차이 등으로 인해 각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조세부담은 기업별로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효법인세율로 측정된 기업의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차이가 기업규모, 자본집약도, 연구개발집약도, 부채비율, 자산수익률 등의 기업특성과 체계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조세부담측정치로서 기업특성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대 손익계산서 상의 법인세등(ETR1)과 당기순이익 대 손익계산서 상의 법인세등(ETR2)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3부터 2009년까지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회귀계수 중 부채비율과 자본집약도, 자산수익률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였다. 반면, 기업규모와 연구개발집약도, 유형자산투자비율은 유효법인세율과 유의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 중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한 회귀계수는 자산수익률로서 이익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보다 적극적인 조세전략을 사용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자본집약도와 부채비율의 회귀계수를 보면 ETR1과 ETR2에서 유의수준 1% 내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 이는 자본집약적인 기업일수록 유효법인세율이 낮다는 것은 조세지원이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킬 만큼 충분히 시행되었으며, 조세자체의 성격상 기업투자의 수익률을 낮추는 경제적 효과가 있어 투자에 뚜렷한 효과를 주었다고 판단된다. 부채비율의 경우에는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항목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유효법인세율은 어떤 대응치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며, 다양한 대응치를 이용하여 결과가 일관성을 유지하는가를 검토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유효법인세율 대용치의 분모로 법인세차감전 순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사용하였고, 분석결과 일관된 결과가 유지되었으므로 한 기업의 조세부담이 다르게 파악되는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지원이 특정 경제활동을 활성화할 목적에서 선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유효법인세율이 기업별로 차이가나며, 이러한 차이는 기업특성과 체계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과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사용된 유효법인세율 대용치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대용치이기는 하지만 이외에도 다른 대용치들이 사용될 수 있다. 즉, 분자로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의 조정 후 법인세, 준조세를 함께 고려하거나 분모로 이익대신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다른 대용치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조세부담은 실제의 세무조정 자료를 분석하기 이전에는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도 실제 과세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여야 하나 자료가 공시되지 않아 입수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기업에서 공시하는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세금보조금은 세무조정사항,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항목이 매출총이익,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법인세 등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 지를 분석하는 것도 분모에 이용될 변수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과정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상장기업만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비상장기업을 연구대상 기업에서 제외함으로써 인해 증권시장에 상장여부 등이 기업특성에 따라 기업의 조세부담이 차이가 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분석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김월주, “우리나라 기업의 조세부담률 차이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박종일·김경호, “세금비용과 이익조정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27권 2호, 2002.
- 김문태, “법인세부담 감소를 위한 연구개발비의 비용화 유인”, 회계정보연구 제24권 4호, 2006.
- 김태완, “기업특성이 법인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김학동,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김성기·안숙찬, “유효법인세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경영논집. 제28권 제3호, 1994.
- 권순철·권순, “상장기업의 유효법인세율에 관한 검토”, 세무학연구. 제5호 한국세무학회, 1993.
- 노은옥,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노형섭·정문현, “기업규모와 유효법인세율간의 관계 : 정치적비용가설과 조세혜택가설의 검증”, 세무학연구 제6호, 1995.
- 김기평·이영태·최화섭, “세무회계”, 청목출판사, 2006.
- 박승학, “기업특성이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0.
- 심석무·김진영, “기업특성용인과 유효법인세율의 관계”, 한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 제14호, 2000.
- 신경미, “기업특성에 따른 조세부담차이”,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이은하,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최종욱, “기업특성이 법인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안숙찬, “조세부담과 기업특성”, 세무학연구, 제8호, 1996.
- 허윤정, “기업특성과 유효법인세율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조성표, “우리나라 기업의 정치적 비용에 관한 실증연구 : 명시적 조세와 암묵적 조세를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10호, 1990.
- 전규안, “법인세부담의 공평성과 기업특성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7.
- 전규안, “기업특성이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22권 제4호, 1997.
- 편무현, “기업특성요인과 조세혜택에 관한 실증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국외문헌>

- Allan R. G and H. J. Iglarsh, "A cluster Analysis of Horizontal Tax Equity",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996.
- Enis, C. R. and D L. Craig, "An Empirical Analysis of Equity and Efficiency Attributes of Degressive Forms of a Flat Tax", Journal of American Taxateion Association, 1990.
- Kern, Beth B. and Michael H. Morris, "Taxes and Firm Size : The Effects of Tax Legislation During the 1980s",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992.
- Omer, C. Thomas, Karen H. Molly and David A. Zieart, "Measurement of Effective Corporate Tax Rates Using Financial Statement Information."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991.
- Porcano, "Corporate Tax Rates : Regressive, Proportional or Regressive", The Jo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986.
- Spooner, "Effective Tax Rates From Financial Statement", National Tax Journal 1986. (Septenber).

- Stickney, C. P. and V. E McGee. "Effective corporate tax rate—the effect of size, capital intensity, leverage, and other factors", *The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1982.
- Watts, R and Zimmerman, J, *Positive Accounting Theory*, Prentice–Hall, 1986.
- Wilkie, P. J, "Corporate Average Effective Tax Rate and Inferences about Relative Tax Preferences",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988.
- _____. "Empirical Evidence of Implicit Taxes in the Corporate Sector."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4 (Spring), 1992.
- Wilkie, P. J. and S. T. Limberg, "The relationship between firm size and effective tax rate : a reconciliation of Zimmerman(983) and Porcano(19986)",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1, 1990.
- _____. "Measuring Explicit Tax (Dis)Advantage for Corporate Taxpapers : An Alternative to Average Effective Tax Rates",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2, 1993.
- Zimmerman, J. L, "Taxes and Firm siz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 1983.

저작물 이용 허락서

| | | | | | |
|------|---|-----|----------|-----|----|
| 학 과 | 회계학과 | 학 번 | 20097264 | 과 정 | 석사 |
| 성 명 | 한글: 신재영 한문 : 辛宰榮 영문 : Shin Jae Young | | | | |
| 주 소 | 광주 운림동 무등스위트맨션 1202호 | | | | |
| 연락처 | E-MAIL : syhn12@nate.com | | | | |
| 논문제목 | 한글 : 기업특성에 따른 법인세부담에 관한 연구 영어 : A study on The Corporation TAX Burden by Firm Characteristics. | | | | |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0) 반대()

2011 년 2 월 일

저작자: 신 재 영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